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0-20호
2020. 3. 20.(금)

차 례

조 례(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35호) ····· 1

규 칙(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88호) ····· 5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46호) ····· 8

고 시(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30호) ····· 11

• 대화2구역 어린이공원 외 2개소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20-31호) 12

공 고(3)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268호) ····· 18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269호) ····· 19

• 하수처리구역(변경) 공고(공고 제2020-274호) ····· 20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67호) ····· 21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3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2명”을 “72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07명”을 “70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덕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24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721					
	3급	1	1				
	4급	4	3		1		
	5급	42	23	3	3	1	12
	6급 이하	674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2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07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724명 ---------- -----. 1. ---------- 709명 2.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구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 업무 인력 충원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22명”에서 “724명”으로 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7”명에서 “709명”으로 조정함(제2조).

❍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별표 2 및 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8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5～p.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 업무 인력 충원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기관별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4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5 ~ p.7

[별표 5] 동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5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8 ~ p.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기관(부서)별 직급 · 직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청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및 별표 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3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삼정동 308-14	대청로424번안길 2	2020. 3. 20.	건물신축	대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 - 31호

대화2구역 어린이공원 외 2개소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43-1번지 일원,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민의 건강 및 휴식·소통의 장으로써의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대화2구역 어린이공원 외 2개소 조성계획) 결정(최초) 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화2구역 어린이공원 외 2개소 조성계획) 결정(최초)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가. 대화2구역 어린이공원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규		대화2구역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43-1번지 일원	1,65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2009.6.26.)	

2) 공원조성계획 결정사유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대화2구역 어린이공원	합 계	1,658㎡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2009.6.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었음.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공원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시민의 건강, 휴식공간으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원조성계획 수립코자 함.
	○ 시설면적	865.7㎡	
	- 기반시설	325.4㎡	
	- 휴양시설	97.5㎡	
	- 유희시설	347.2㎡	
	- 운동시설	34.9㎡	
	- 편익시설	60.7㎡	
	○ 녹지면적	792.3㎡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① 공원조성계획 결정 총괄조서

구분	공 원 면 적 (㎡)			건 축 면 적 (㎡)		비 고
	계	시설면적	녹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1,658	865.7	792.3	60.7	60.7	시설률 52.2% 건폐율 3.7%

②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설조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58.0	100.0	60.7	60.7	
시설소계			865.7	52.2	60.7	60.7	시설률 : 52.2%
	소계		325.4	19.6	-	-	
	기반시설	도로	169.0	10.2	-	-	
		광장	156.4	9.4	-	-	
	조경시설		-	-	-	-	
	휴양시설		97.5	5.9	-	-	
	유희시설		347.2	20.9			
	운동시설		34.9	2.1	-	-	
	편익시설		60.7	3.7	60.7	60.7	
	관리시설		-	-			
	교양시설		-	-	-	-	
녹지			792.3	47.8	-	-	녹지율 : 47.8%

③ 공원조성계획 결정 세부시설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시설 (개소)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58.0	53	60.7	60.7	
시설소계			865.7	53	60.7	60.7	시설률 : 52.2%
기반시설		소계	325.4	-	-	-	
		도로	169.0	-	-	-	도로조서참고
	가-1~6	광장	156.4	-	-	-	
조경시설		소계	-	1	-	-	
	①	플랜터	-	1	-	-	
휴양시설		소 계	97.5	25	-	-	
	나-1	휴게마당1	73.0	-	-	-	
	나-2	휴게마당2	18.7	-	-	-	
	②	파고라	-	2	-	-	
	③	하늘바라기앉음벽	5.8	1	-	-	
	④	등의자	-	16	-	-	
	⑤	평의자	-	6	-	-	

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시설 (개소)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소계	347.2	4	-	-	
	다-1	놀이공간1	162.3	-	-	-	
	다-2	놀이공간2	121.3	-	-	-	
	다-3	놀이공간3	63.6	-	-	-	
	⑥	짚라인	-	1	-	-	
	⑦	모험놀이대	-	1	-	-	
	⑧	모래놀이집	-	1	-	-	
	⑨	나무테이블	-	1	-	-	
운동시설		소계	34.9	1	-	-	
	라	체력단련장	34.9	-	-	-	
	⑩	복합운동시설	-	1	-	-	
편익시설		소계	60.7	-	60.7	60.7	
	마	화장실	60.7	-	60.7	60.7	
관리시설		소계	-	21	-	-	
	⑪	안내판	-	2	-	-	
	⑫	놀이시설안내판	-	3	-	-	
	⑬	빗물정원설명판	-	1	-	-	
	⑭	공원등	-	13	-	-	
	⑮	CCTV	-	2	-	-	
교양시설		소계	-	1	-	-	
	⑯	책장	-	1	-	-	
녹 지			792.3	-	-	-	녹지율 : 47.8%

④ 도로 결정 세부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113.0	169.0	-	-	-	
소 로	신설	3	1	2.0	4.5	9.0	산책로	광장5	광장4	
			2		6.8	13.6		광장4	진입부	
			3	1.5	16.1	24.2		광장1	광장6	
			4		22.7	34.1		광장6	광장5	
			5		11.3	17.0		광장1	광장2	
			6		12.9	19.4		광장2	광장3	
			7		17.6	26.4		광장3	광장4	
			8	1.2	11.8	14.1		소로3-3	광장2	
			9		9.3	11.2		광장6	광장3	

4) 관계도면 : 게재생략

나. 대화2-1 소공원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대화2-1 소공원	소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36번지 일원	1,250.0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2009.6.26.)	

2) 공원조성계획 결정사유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대화2-1 소공원	**합 계**	**1,250㎡**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2009.6.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었음.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공원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시민의 건강, 휴식공간으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원조성계획 수립코자 함.
	○ 시설면적	**245.2㎡**	
	- 기반시설	192.0㎡	
	- 휴양시설	53.2㎡	
	○ 녹지면적	**1,004.8㎡**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① 공원조성계획 결정 총괄조서

구분	공 원 면 적 (㎡)			건 축 면 적 (㎡)		비 고
	계	시설면적	녹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1,250.0	245.2	1,004.8	-	-	시설률 19.6%

②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설조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250**	**100**	**-**	**-**	
시설소계			245.2	19.6	**-**	**-**	**시설률 : 19.6%**
	소계		192.0	15.4	-	-	
	기반시설	도로	118.0	9.4	-	-	
		광장	74.0	6.0	-	-	
	조경시설		-	-	-	-	
	휴양시설		53.2	4.2	-	-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	-	-	-	
	편익시설		-	-	-	-	
	관리시설		-	-	-	-	
녹지			**1,004.8**	**80.4**	**-**	**-**	**녹지율 : 80.4%**

③ 공원조성계획 결정 세부시설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시설 (개소)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250**	**23**	**-**	**-**	
시설소계			**245.2**	**23**	**-**	**-**	**시설률 : 19.6%**
기반시설		소계	192.0	-	-	-	
		도로	118.0	-	-	-	도로조서참고
	가-1,2	광장	74.0	-	-	-	
조경시설		소계	-	2	-	-	
	①	플랜터	-	1	-	-	
	②	디딤석	-	1	-	-	
휴양시설		소계	53.2	12	-	-	
	나-1	휴게마당1	34.1	-	-	-	
	나-2	휴게마당2	14.6	-	-	-	
	③	낮잠데크	-	1	-	-	
	④	평상	-	1	-	-	
	⑤	앉음벽	4.5	3	-	-	
	⑥	등의자	-	7	-	-	

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시설 (개소)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	9	-	-	
	⑦	안내판	-	2	-	-	
	⑧	공원등	-	5	-	-	
	⑨	CCTV	-	2	-	-	
녹 지			1,004.8	-	-	-	녹지율 : 80.4%

④ 도로 결정 세부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77	118	-	-	-	
소 로	신설	3	1	2.0	4.9	9.8	산책로	진입부	소로3-2	
			2	1.5	72.1	108.2		광장1	광장2	

4) 관계도면 : 게재생략

다. 대화2-2 소공원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대화2-2 소공원	소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5-466번지 일원	1,372.0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63호(2017.11.01.)	

2) 공원조성계획 결정사유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대화2-1 소공원	합 계	1,372㎡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63호(2017.11.0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었음.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공원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시민의 건강, 휴식공간으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원조성계획 수립코자 함.
	○ 시설면적	271.5㎡	
	- 기반시설	223.0㎡	
	- 휴양시설	32.5㎡	
	- 운동시설	16.0㎡	
	○ 녹지면적	1,100.5㎡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① 공원조성계획 결정 총괄조서

구분	공 원 면 적 (㎡)			건 축 면 적 (㎡)		비 고
	계	시설면적	녹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1,372.0	271.5	1,100.5	-	-	시설률 19.8%

②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설조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372.0	100	-	-	
시설소계			271.5	19.8	-	-	시설률 : 19.8%
	소계		223.0	16.2	-	-	
	기반 시설	도로	183.5	13.4	-	-	
		광장	39.5	2.8	-	-	
	조경시설		-	-	-	-	
	휴양시설		32.5	2.4	-	-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16.0	1.2	-	-	
	편익시설		-	-	-	-	
	관리시설		-	-	-	-	
녹지			1,100.5	80.2	-	-	녹지율 : 80.2%

③ 공원조성계획 결정 세부시설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시설 (개소)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372.0	36	-	-	
시설소계			271.5	36	-	-	시설률 : 19.8%
기반시설		소계	223.0	-	-	-	
		도로	183.5	-	-	-	도로조서참고
	가	광장	39.5	-	-	-	
조경시설		소계	-	9	-	-	
	①	계단	-	1	-	-	
	②	농부조형물	-	4	-	-	
	③	수목식수대	-	3	-	-	
	④	디딤석	-	1	-	-	
휴양시설		소계	32.5	13	-	-	
	나	전망대	15.6	-	-	-	
	다	휴게쉼터	3.4	-	-	-	
	⑤	파고라	-	1	-	-	
	⑥	앉음벽	13.5	4	-	-	
	⑦	평상	-	1	-	-	
	⑧	등의자	-	4	-	-	
	⑨	평의자	-	3	-	-	
운동시설		소계	16.0	2	-	-	
	라-1	체력단련장1	8.0	-	-	-	
	라-2	체력단련장2	8.0	-	-	-	
	⑩	체력단련시설	-	2	-	-	
관리시설		소계	-	12	-	-	
	⑪	안내판	-	2	-	-	
	⑫	공원등	-	8	-	-	
	⑬	CCTV	-	1	-	-	
	⑭	안전휀스	-	1	-	-	
녹 지			1,100.5	-	-	-	녹지율 : 80.2%

④ 도로 결정 세부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122.4	183.5	-	-	-	
소 로	신설	3	1	1.5	32.7	49.0	산책로	진입부	소로3-2	
			2		31.7	47.5		진입부	소로3-4	
			3		17.9	26.9		소로3-2	광장	
			4		40.1	60.1		광장	부지경계	

4) 관계도면 : 게재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0-268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청 공공교통정책과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대청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신탄진동 121-12	-	소형고압블록	2.00	착공일로부터 8개월	2.40 (착공일로부터 8개월)	0.39
2	대덕구 신탄진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읍내동 519-3	-	소형고압블록	5.00	착공일로부터 8개월	6.00 (착공일로부터 8개월)	0.39
3	대덕구 신탄진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읍내동 128-3	-	소형고압블록	9.00	착공일로부터 8개월	10.80 (착공일로부터 8개월	0.01
4	대덕구 신탄진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평촌동 산 41-3	-	소형고압블록	2.00	착공일로부터 8개월	2.40 (착공일로부터 8개월)	0.61
5	대덕구 신탄진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평촌동 534-23	-	소형고압블록	1.00	착공일로부터 8개월	1.20 (착공일로부터 8개월)	0.39
6	대덕구 동서대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비래동 561-1	-	소형고압블록	2.00	착공일로부터 8개월	2.40 (착공일로부터 8개월)	0.61
7	대덕구 덕암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덕암동 70-17	-	투수콘	6.00	착공일로부터 8개월	8.20 (착공일로부터 8개월)	0.62
8	대덕구 신탄진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상서동 282-1	-	소형고압블록	2.00	착공일로부터 8개월	2.40 (착공일로부터 8개월)	0.61
9	대덕구 신탄진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상서동 349-65	-	투수콘	10.00	착공일로부터 8개월	20.00 (착공일로부터 8개월)	0.4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0 - 269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동서대로	통신관로 매설	송촌동 292-5	60.00	아스콘, 투수아스콘, 투수블록	59.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72.00 (착공일로부터20일)	3.6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274호

하수처리구역(변경)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수처리 구역(변경)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공람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하수종말처리장별 수질

(단위 : ㎎/ ℓ)

하수처리장명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기준		5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대전하수처리장	유입수질	197.3	110.4	155.7	49.914	4.483	215,100
	방류수질	2.0	10.5	2.4	8.746	0.161	114
흑석하수처리장	유입수질	109.4	62.8	102.6	24.718	2.329	91,596
	방류수질	0.7	3.4	2.0	4.710	0.032	14

2. 하수처리구역 변경사항

〈변경 : 하수배제방식 - 추가 편입〉

(단위 : ㎡)

구	위 치	당 초		변 경		면적증감		비 고
		배제방식	면 적	배제방식	면 적	합류식	분류식	
대덕구	장동 47번지 외 761필지	처리외 지 역	-	분류식	790,014	-	790,014	전용관로 매설

※ 추가 편입 사유 : "장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

3. 효력발생 및 시행시기 : 공고일로부터

4.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건설과)

5.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하며 개별통지 없이 공고로 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608-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26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근거 마련 및 조문 현행화

3. 주요내용

가.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안 제4조제4항).

나. 종량제 봉투 감면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5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별표 및 별지 내용 현행화(안 별표 1,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후환경과(전화 : 042-608-6833, FAX : 042-608-3834, E-Mail : rhjfirst@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후환경과 담당자 류현정(전화 : 042-608-68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료화·퇴비화 시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리보관은 다음 각호”를 “분리 보관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가능”을 “재활용 가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작설치”를 “제작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량제봉투가 아닌 용기등”을 “종량제 봉투가 아닌 용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동별수거일정”을 “동별 수거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형폐기물스티커”라 한다)을 종량제봉투판매소, 동 주민센터”를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대형 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10,000원권,15,000원권”을 “10,000원권, 15,000원권”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재질등)”을 “(종량제 봉투의 색상 및 재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량제봉투의 색상”을 “종량제 봉투의 색상”으로, “공공용봉투”를 “공공용 봉투”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종량제봉투는”을 “종량제 봉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종량제봉투”를 “다만,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인쇄원판”을 “인쇄 원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민간제조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민간 제조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를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공급받고자할”을 “공급받고자 할”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구청장또는공급대행자”를 각각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로, 같은 항 중 “한후”를 “한 후”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공용봉투를”을 “공공용 봉투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골목길등의 특별대청소”를 “골목길 등의 특별 대청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5항 중 “공공용봉투”를 각각 “공공용 봉투”로, 같은 항 중 “수불사항”을 “수불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를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대행자”를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등”을 “징수 등”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및”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감면대상자”를 “감면 대상자”로, “1세대당”을 “1세대 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동장은 조례”를 “조례”로, “감면사유 2이상에 해당되었을”을 “복수의 감면사유에 해당될”로, “감면사유 1”을 “유리한 감면사유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대상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대장에 지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7호서식의 명부를 작성하여 감면 대상자의 전·출입 사항등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경우 봉사단체 관리부서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지급요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에 대한 배부는 지급요청한 부서에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일정·장소·용기 사용 미준수행위, 분리보관·배출위반행위, 종량제봉투를 묶지않고”를 “일정·장소·용기사용 미준수 행위, 분리 보관·배출 위반행위, 종량제봉투를 묶지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특별대청소”를 “특별 대청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에 대한 사항

별표 1,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기존 제작분의 소진 후 재제작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스티커(제4조의2제2항 관련)

NO : (누계연번)

폐 기 물 부 착 용	배 출 자 보 관 용
판매업소 : ( )	판매업소 : ( )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액 :	금액 :
ㅇ 배 출 자 : ㅇ 배 출 일 : 년 월 일 ㅇ 배출장소 :	ㅇ 배 출 자 : ㅇ 배 출 일 : 년 월 일 ㅇ 배출장소 :
배출품목	배출품목
※ 배출품목에 ○표 하십시오	※ 배출품목에 ○표 하십시오
※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반드시 **구청 기후환경과 (608-6831~7)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오정동(608-5601), 대화동(608-5602), 회덕동(608-5603) 비래동(608-5604), 송촌동(608-5605), 중리동(608-5606) 법 1동(608-5607), 법 2동(608-5608), 신탄진동(608-5609) 석봉동(608-5610), 덕암동(608-5611), 목상동(608-5612)	※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반드시 **구청 기후환경과 (608-6831~7)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오정동(608-5601), 대화동(608-5602), 회덕동(608-5603) 비래동(608-5604), 송촌동(608-5605), 중리동(608-5606) 법 1동(608-5607), 법 2동(608-5608), 신탄진동(608-5609) 석봉동(608-5610), 덕암동(608-5611), 목상동(608-5612)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인〕(인영인쇄)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인〕(인영인쇄)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 발급대장

호수	지정 년월일	상호 (업종)	위치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257㎜ × 364㎜(인쇄용지 2급 60g / ㎡)

<별지 제5호서식>

일반용봉투 수불대장

(단위 : 매)

월일	적요	납 품											공 급										잔 매										결재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팀장	동장

64㎜ × 267㎜(인쇄용지 2급 60g / ㎡)

<별지 제10호서식>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신청서

구 분		수 량(매)	공급단가(원)	금 액	비 고
일반용 봉투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대형폐기물 스티커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15,000원				
계					

위와 같이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대덕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생 략) 2. 사료화·퇴비화시설 3.·4. (생 략)	제2조의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 폐기물 처리시설----------. 1. (현행과 같음) 2. 사료화·퇴비화 시설 3.·4. (현행과 같음)
제3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방법)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과 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기본품목별로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방법) ---------- 분리 보관은 다음 각 호----------. 1. ---------- -- 재활용 가능 폐기물------ -. 2. 재활용 가능 ----------.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한 배출장소를 뜻하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고, 용기는 구청장이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제작설치한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말한다.	---------- 제작 설치----------.
② 연탄재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용기등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② ------- 종량제 봉투가 아닌 용기 등----------.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 동별 수거일정----------.
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티커"라 한다)을 종량제봉투판매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서 구입한 후 대형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동장에게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 동행정복지센터 ---------- 대형폐기물----------.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가격별로 2,000원권, 3,000원권, 4,000원권, 5,000원권, 6,000원권, 7,000원권, 8,00	제4조의2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

0원권, 10,000원권,15,000원권으로 한다.	--- 10,000원권, 15,000원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재질등) ①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연두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6조 (종량제 봉투의 색상 및 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의 색상---공공용 봉투----.
제7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매년 분기별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종량제봉투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을 때에는 긴급 제작할 수 있다.	제7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 다만, 종량제 봉투 ---.
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인쇄원판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제조업체에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하는 동안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 업무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종량제 봉투 --- 인쇄원판---. ----- 민간 제조업체에서 종량제 봉투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8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제8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가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또는공급대행자에게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을 신청한다.	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 종량제 봉투 ---------- ---------- 공급받고자 할 ---------- ----------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 -----.
② 구청장또는공급대행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한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자에게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 ---------- 한후 ---------- 대형폐기물 스티커 ---------- -------.
③ 삭 제	
④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요원에게 가로청소작업에 필요한 적정량의 공공용봉투를 공급한다. 또한 골목길등의 특별대청소를 실시할 경우에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공급한다.	④ ---------- ---------- 공공용 봉투를 -----. ---- 골목길 등의 특별 대청소 ---------- 공공용 봉투---------.
⑤ 구청장과 동장은 제4항의 규	⑤ ----------

정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공공용 봉투의 수불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공공용 봉투---------- ---------- 수불 사항----------.
제10조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제10조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대행자 또는 지정판매소 공급금액으로 부과 및 징수한다.	① ----------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대행자 ----------.
②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징수 등----------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감면대상자(“배우자”를	① ---------- 감면 대상자--------

포함한다)는 1세대당 4인 가족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 1세대 당 ----------.
② 동장은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가 감면사유 2이상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중 감면사유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조례 ---------- 복수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 유리한 감면사유 하나----------.
③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자에게 일반용봉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대장에 지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7호서식의 명부를 작성하여 감면대상자의 전·출입 사항등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대장에 지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7호서식의 명부를 작성하여 감면 대상자의 전·출입 사항등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조례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경우 봉사단체 관리부서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지급요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에 대한 배부는 지급요청한 부서에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56	제13조 (권한의 위임) ---------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불법소각행위, 정해진 일정·장소·용기 사용 미준수행위, 분리보관·배출위반행위, 종량제봉투를 묶지않고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5. ----------, ---- 일정·장소·용기사용 미준수 행위, 분리 보관·배출 위반행위, 종량제 봉투를 묶지 않고 ----------
6.·7. 삭 제	
8. 특별대청소의 날 지정 및 실시	8. 특별 대청소----------
<신 설>	9.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에 대한 사항

[관 계 법 령]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6.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세대에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 중 직계존속·비속에 한정하여 1인당 매월 20리터 이내의 종량제봉투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종량제 일반용봉투 무료지급을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대상자만 지급한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III.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100L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 공공용 봉투 용량: 30L, 50L, 100L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L, 5L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환경과	
담 당 자 연 락 처	류 현 정 042-608-6833